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고기관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65호로 2013년 11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또한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갱신기간이 도래한 수탁자에 대해 형식적 심사절차, 내부결재 등을 통해 재위탁하고 있음.

이에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계약을 통한 위탁기간 연장 시 심사위원회를 통한 사전심의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민간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회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공무원인 위원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 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 하였음(안 제10조)
-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방식에 의할 경우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투명화·명확화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전심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위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에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분권의 가속화와 현대행정의 복잡 다양성으로 인해 지방행정의 담당영역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공공부문 서비스에 민간의 전문성과 창조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무의 민간위탁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2010.12.5 의결)의 권고사항을 준용 하였고, 민간위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

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